# 연수세칙

제 정 2007. 1. 31 개 정(1) 2016. 6. 16 개 정(2) 2017. 3. 9 개 정(3) 2017. 9. 28 개 정(4) 2018. 3. 29 개 정(5) 2021. 1. 6 개 정(6) 2022. 1. 25

#### 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세칙은 임·직원 연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- 제2조(연수의 목표) 연수는 임·직원의 직무능력 향상과 자기개발을 위한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유능하고 양식있는 임·직원을 양성하여 공사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그 목표로 한다.
- **제3조(연수의 구분)** ①연수는 연수주관부서 연수, 소관부서 연수, 자기주도학습으로 구분한다.
  - ②연수는 국내연수, 국외연수로 구분한다. 다만, 해외지사연수의 경우에는 연수주관부서의 별도의 판단에 따른다.
  - ③연수는 연수기간에 따라 단기연수(연수기간 1년 이하), 장기연수(연수기간 1년 초과)로 구분한다.
- 제4조(연수계획의 수립 및 변경) ①연수 주관부서장(이하 "주관부서장" 이라 한다.)은 매 회계연도 예산 수립 시 연수계획을 수립하여 사장의 승인을 받는다.
  - ②전항의 연수계획은 연간 연수운용규모 및 연수과정별 세부내용으로 구성하며, 필요한 경우 각 부서를 대상으로 연수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  - ③제1항에 의하여 확정된 연수계획은 사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.
- 제5조(연수자의 선정 및 취소) ①주관부서장은 제4조(연수계획의 수립 및 변경)의 연수계획에 따라 연수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임·직원을 전결권자의 승인을 얻어 연수자로 선정한다.

- ②주관부서장은 선정된 연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연수자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. 연수의 취소에 관한 사항은 주관부서장이 별도로 정한다.
- 1. 선정된 연수자가 「상벌세칙」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연수자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.
- 2. 질병, 사고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소정의 연수를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소환기일을 지정하여 소환하거나 연수자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.
- 3. 학술연수자가 지원하는 대학, 대학원 또는 연구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입학전형에 불합격하여 수학할 수 없게 된 경우. 다만, 불합격사유가 불가피하 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연수자 선정의 취소를 1년 내에서 유예할 수 있다.
- 4. 국외연수자가 적기에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출국하지 못한 경우. 다만, 출국 지연사유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 1년 이내에서 출국을 연기할 수 있다.
- 제6조(강사위촉) ①주관부서장은 임·직원 또는 국내외 전문가를 연수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.
  - ②위촉된 강사에게는 강사료 및 기타 비용을 지급할 수 있으며, 강사로 위촉된임·직원에 대한 사내강사료 지급기준은 별표 1호를 따른다.
- 제7조(사전교육 및 연수과제 부여) ①주관부서장은 연수자에 대하여 연수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사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  - ②주관부서장은 필요한 경우 연수자에게 특정 연수과제를 부여할 수 있다.
- 제8조(연수의 이수의무 및 특례) ①이 세칙에 의해 연수자로 선정된 임·직원은 당해과정의 연수를 이수하여야 한다.
  - ②주관부서장은 해외지사 또는 국외파견 및 공상으로 인한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수 참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및 당해 연수과정과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해당 연수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할 수 있다.
- 제9조(부서장의 협조의무) 각 부서장은 소속직원이 연수자로 선정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연수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참가하기 가 곤란한 경우 서면으로 그 사유를 제출하여 주관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제10조(연수경로) 주관부서장은 직무의 전문성 제고 및 임·직원들의 학습효과 증진을 위하여 직무 등급별 연수과정을 이수하도록 연수경로를 설정하여 운용할수 있다.

- 제11조(연수평가) 주관부서장은 연수효과의 측정과 연수업무의 개선 및 인사관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
- 제12조(연수제재) 주관부서장은 소정의 요건에 미달되는 연수자에 대하여는 연수 제재를 할 수 있다.
- 제13조(하부위임) 이 세칙에서 특별히 위임한 사항과 기타 이 세칙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주관부서장이 따로 정한다.

#### 제2장 국내연수

- 제14조(국내업무연수) ①주관부서장은 임·직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등의 습득을 위하여 국내에서 업무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.
  - ②제1항의 국내업무연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.
  - 1. 공사의 비전 및 핵심가치 공유, 임·직원 상호간의 공동체의식 함양 및 이해 증진, 본·지사 직원간의 문화 이해를 위한 조직개발연수
  - 2. 공사에 입사하는 직원의 조직적응 및 자질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신규입사자 연수
  - 3. 관리자의 리더십 향상을 위한 리더십 연수
  - 4. 해당 직무의 전문가로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기능의 향상을 위한 직무연수
  - 5. 어학능력 향상을 위한 외국어 연수
  - 6. 정년 등의 사유로 퇴직예정 직원에 대하여 퇴직 이후의 사회활동 지원 및 적 응능력 배양 등을 위한 퇴직지원 연수
  - 7.제1호 내지 제6호 이외에 임·직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, 교양 등의 습 득을 위한 기타연수
- 제15조(국내학술연수) ①주관부서장은 국내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이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국내학술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. ②제1항의 국내학술연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.
  - 1. 국내 대학, 국내 대학원 또는 연구기관에서의 학위취득을 위한 학위과정
  - 2. 국내 대학원 또는 연구기관 등에서의 특정분야 전문지식 및 이론 습득을 위한 비학위과정

#### 제3장 국외연수

- 제16조(국외업무연수) ①주관부서장은 외국의 금융기관, 국제기구, 교육기관 등에서 실무지식과 이론 습득, 경영관리 능력 향상 등을 위하여 국외직무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.
  - ②주관부서장은 어학능력 향상을 위하여 국외 어학 전문기관에서 국외어학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.
  - ③주관부서장은 제1항 내지 제2항 이외의 해외체험을 통한 국제화능력 배양, 지역 전문가 양성 등을 위하여 기타 국외업무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.
- 제17조(국외학술연수) ①주관부서장은 국외의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업무수 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이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국외학술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.
  - ②제1항의 국외학술연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.
  - 1. 경영학, 경제학, 금융공학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술분야의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외국의 대학원 또는 연구기관에서 실시하는 학위과정
  - 2. 특정분야 전문지식 및 이론 습득 또는 지역 전문가 양성 등을 위하여 외국의 대학, 연구기관에서 실시하는 비학위과정

## 제4장 소관부서 연수 및 자기주도학습

- 제18조(소관부서연수) ①각 부서장은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직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.
  - ②전항의 연수를 실시하는 경우 실시부서장은 당해 연수과정의 개설 타당성과 소요예산의 처리방법 등에 관하여 주관부서장의 합의를 득하여야 하며 실시결과 를 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한다.
- 제19조(자기주도학습) ①공사는 임·직원의 업무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어학교육, 전문자격증 취득 및 유지 등 자기개발을 위한 학습활동을 지원 할 수 있다.
  - ②공사는 임·직원의 일과 삶의 조화 추구를 위해 상시교육 또는 재교육을 위한 자기주도적인 학습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.
  - ③주관부서장은 자기개발을 위한 학습활동 및 자기주도학습과 관련한 상세 운영 방안을 별도의 지침 또는 운영안을 마련하여 운영한다.

#### 제5장 연수경비

- 제20조(연수비의 지급) ①공사는 연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소요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.
  - ②국외연수는 단기연수와 장기연수로 구분하여 공사 연수자에 대하여 별표 2호 와 별표 3호에서 정한 연수경비 중 해당경비를 지급한다. 다만, 단기연수는 아 래와 같이 경비를 지급한다.
  - 1. 90일 이하의 단기연수는 여비세칙에 따른 경비를 지급
  - 2. 90일을 초과하는 단기연수는 90일을 초과하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별표 2호에서 정한 장기연수자 월당체재비를 적용하여 지급
  - ③국외연수기간중 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사망 등 예측 불가능한 사유의 발생으로 일시 귀국하는 연수자에 대하여는 관련내규에 의한 교통비를 지급 할 수 있다.
  - ④제2항의 경비에 대하여 전결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정부의 외환사용에 관한 특별허가 또는 제한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증감 지급할 수 있다.
  - ⑤국내외학술연수자 또는 90일을 초과하는 국외업무연수자로 제1항 내지 제4항 의 연수 경비를 지급하는 경우 주관부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약서(별표 4 호)를 제출한다.
- 제21조(연수비의 차감지급)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연수기관에서 연수비를 보조할 경우에는 동 보조액을 별표 5호에 따라 차감하여 지급한다.

### 제6장 연수관리

- 제22조(연수기간) ①위탁연수 및 국외연수의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. 다만, 이수 기간이 학제 상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소요기간으로 한다.
  - ②불가피한 사유로 전항의 연수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전결권자의 승인을 얻어 이수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.
  - ③국외연수기간은 연수기관의 실제연수기간에 별표 6호에서 정한 국외여행소요 일수를 합한 기간으로 한다. 다만, 90일을 초과하는 국외연수의 연수기간 전후 각 14일 이내의 기간을 실제연수기간에 가산할 수 있다.
- 제23조(연수자의 의무) ①연수자로 선정된 자는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연수에

- 임하여야 한다.
- ②연수자는 연수 기간 중 신상 또는 연수에 관련된 중요 변동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주관부서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- ③연수자는 공사가 요구하는 각종 보고서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, 필요한 세부사항은 주관부서장이 별도로 정한다.
- 제24조(서약서 등의 제출) 국내외학술연수자와 90일을 초과하는 국외업무연수자로 선정된 자는 제20조에 의거 서약서(별표 4호)를 제출한다.
- 제25조(연수이수의 요건) ①국내업무연수의 이수요건은 출석률 80% 이상과 평가고사를 실시한 경우 그 성적은 당해기관이 정하는 기준이상으로 한다. 단, 상기이수요건의 충족여부는 당해 기관의 이수요건 충족을 증빙하는 자료로 갈음할수 있다.
  - ②국내외학술연수와 국외업무연수의 이수요건은 당해 기관의 이수요건을 기준으로 한다.
- 제26조(연수의 중지) 주관부서장은 연수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전결 권자의 승인을 얻어 연수자에게 연수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.
  - 1. 질병, 사고 등으로 연수를 계속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  - 2. 제23조(연수자의 의무)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  - 3. 기타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- 제27조(의무근무기간) ①국내외학술연수자 중 업무와 병행하여 연수를 실시한 자는 연수 종료 후 연수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실제 근무하여야 한다.
  - ②국내외학술연수자와 90일을 초과하는 국외업무연수자는 연수 종료 후 5년의 범위 안에서 연수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실제 근무하여야 한다.
  -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실제근무기간은 휴직(공상으로 인한 명령휴직 제외) 및 정직기간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.
  - ④주관부서장은 전항에 불구하고 의무근무기간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수에 대해서는 전결권자의 승인을 얻어 이를 감면할 수 있다.
- 제28조(연수비의 회수) ①주관부서장은 연수자로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별표 7호의 기준에 따라 연수비를 회수한다. 연수비의 회수 시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 하고 연수비의 회수에 관한 세부 사항은 사유 발생시 주관부서장이 별도로 정한다.

- 1. 제26조 제2호에 의한 연수중지의 명령을 받았을 때
- 2. 제27조에 규정된 근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
- 3. 제27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의무근무대상의 연수자가 특별한 사유 없
- 이 연수를 이수하지 아니하거나 중도에서 탈락한 때
- 4.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주관부서장이 정한 이수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때 ②주관부서장은 전항에 불구하고 준정년 퇴직자 및 사망에 의한 퇴직 등 회수액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전결권자의 승인을 얻어 이를 감면할 수 있다.
- 제29조(국외연수자의 일시 귀국) ①국외에서 실시하는 연수에 참가하는 연수자가 국외연수기간 중 일시 귀국하고자 할 때에는 귀국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 관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,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사망 등 예측 불가능한 사유로 일시 귀국한 경우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다.
  - ②국외연수자가 지연출국, 조기귀국,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고 귀국한 경우 또는 승인된 일시귀국기간이 연간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내 체류기간 동안의 체재비를 환입한다.
  - ③국외연수자가 일시귀국하는 경우 주관부서장은 출입국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수자에게 여권 또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### 부 칙(제정)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세칙은 2007년 1월 31일 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세칙의 시행일 이전에 실시한 연수는 이 세칙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.

### 부 칙(1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16년 6월 17일 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(2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17년 3월 9일 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(3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17년 9월 28일 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(4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18년 3월 29일 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(5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.

### 부 칙(6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22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# 사내강사료 지급기준

구분	시간당 강사료	비고
사내 강사		- 근무시간 내는 시간당 5만원 이내 - 일 지급총액은 30만원 한도

주 : 1. 상기 강사료 이외에 강의에 필요한 교안을 작성할 경우 장당 3,000원의 원고료를 지급한다. 다만, 시간당 원고료는 5만원을 한도로 한다.

# 장기연수자 월당체재비 지급기준

(단위:1단위/통화)

미국	일 본	유럽	영국	스위스	캐나다
(USD)	(JPY)	(EUR)	(GBP)	(CHF)	(CAD)
3,120	413,270	2,870	2,460	5,120	3,710
호주	홍 콩	싱기폴	중국	대만	기타
(AUD)	(HKD)	(SGD)	(CNY)	(TWD)	(USD)
4,070	27,000	4,490	20,760	105,840	3,120

- 주 : 1. 장기연수자 월당체재비는 숙박비, 식비 및 시내 교통비 등 연수 참가를 위해 필요한 제 경비를 말한다.
  - 2. 장기연수자 월당체재비 지급 시 1월은 30일로 하고 30일미만의 단수체재 일수에 대하여는 월당체재비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.
  - 3. 연수기관에서 숙박 또는 식사 제공시 제공되는 기간 동안 각각 체재비의 40% 또는 30%를 차감하여 지급한다.
  - 4. 장기연수자의 월당 체재비 지급은 180일 단위로 분할하여 선지급한다.

# 국외연수 경비 지급 기준

항목	지급 기준	비고
등록금, 참가비 등 연수에 소요되는 제 경비	실비의 전액 또는 일부	
왕복교통비 <sup>1)</sup>	실비	
국외이전비 <sup>2)</sup>	USD 800	
국외여행자보험료 <sup>3,4)</sup>	최고 3억원	
의료보험료 <sup>4)</sup>	실비	
송금 수수료	실비	
출·입국 수속 부대비용	실비	
국외연수에 필요한 건강진단비	실비	

- 주 : 1. 왕복교통비는 여비세칙에 따라 지급한다.
  - 2. 국외이전비는 장기연수자에 한해 출국 및 귀국시에 각각 지급한다.
  - 3. 국외여행자보험료의 담보사항은 상해사망, 상해치료 실비, 질병사망, 질병 치료실비, 배상책임, 휴대품, 특별비용, 항공기 납치 등을 말한다.
  - 4.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보험료와 국외여행자보험료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.

#### 연수서약서

현 주 소:

연수목적:

연수지역:

연수기간:

금번 본인이 연수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

- 1. 연수기간 중 국가의 위신과 한국투자공사 직원으로서의 명예가 손상되는 행위는 일체 하지 아니한다.
- 2. 연수기간 중 연수목적에 성실히 전념하여 연수과제 및 기술습득에 전력을 다할 것이며 귀국 후 습득한 지식과 경험으로 회사의 발전에 기여한다.
- 3. 연수기간 중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연수기간, 장소, 연수내용 등의 변경행위를 행하지 아니한다.
- 4. 본인은 연수세칙에 의한 의무복무기간 이상을 한국투자공사에서 근무할 것이며 이를 불이행할 경우 동 세칙에 의거 연수에 소요된 경비를 변상한다.
- 5. 본인은 연수세칙을 위반하거나 연수에서 습득한 정보(지식, 기술자료 등 일체)를 타 회사 또는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 공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공사의 손해배상청구에 따라 반드시 배상한다.
- 6. 본인의 연수세칙 위반에 대한 상환금 및 손해배상금을 공사에서 지급하는 급여, 퇴직금 중에서 우선 상환하여야 한다.
- 7. 상기 사항들을 위반할 경우에는 회사의 어떠한 처분에 대해서도 이에 따른다.

년 월 일

서 약 자 소속:

직 급 :

성 명: (서명)

#### (별표 5호)

# 국외학술연수자의 연수비 차감 지급기준

구분	차감 지급액
현금보조	연수비 총액 - (현금보조액 × 차감비율 <sup>1)</sup> )

주 : 1. 차감비율은 다음과 같음

① TA·RA 활동에 따른 등록금 면제액 : 100/100

② 성적우수장학금 수령 시 등록금 면제액 : 50/100

# 국외여행 소요일수

지	역	아주(대양주 포함) 지역			7	기 타	지 역	]	
구	분	斊	국	입	국	출	국	입	국
일	수	2	일	2	일	3	일	3	일

## 연수비 회수액 산정기준표

구	분	회 수 액
1. 제28조 제1항 1호	해당자	잔여 연수기간에 해당하는 연수비 지급액 및 이자 상당액
2. 제28조 제1항 2호	해당자	연수비지급액 및 이자 상당액 × 의무근무월수 - 실제근무월수 의무근무월수
3. 제28조 제1항 3호	해당자	연수비 지급액 및 이자 상당액×1/2

- 주 : 1. 의무근무월수 및 실제근무월수 계산 시 1월은 30일로,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한다.
  - 2. 국외연수를 위하여 받은 외화표시 연수비 회수액은 연수비 지급시의 환율을 적용한다.
  - 3. 제1호와 제3호의 중복해당자는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적용한다.
  - 4. 제1호 또는 제3호의 해당자가 다시 제2호에 해당된 경우 연수비의 추가회수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.
  - ·추가회수액 = (연수비지급액 및 이자상당액-연수비회수액)×(의무근무월수 -실제근무월수):의무근무월수